

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목적     | ①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하며,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급여계약     |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(단, 양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 만료 전에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해지     | ①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<br>② 다른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<br>③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<br>④ 장기이용 비용을 여러번 지체하였을 경우<br>⑤ 이용자가 <노인장기요양보험법>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<br>⑥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원인수인 권리 |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<br>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<br>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<br>④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<br>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<br>⑥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 |
| 신원인수인 의무 |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<br>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하는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<br>③ 인정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<br>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<br>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상 책임보험  |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비용(본인부담금 30일 기준)]

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| 1등급     | 2등급     | 3~5등급   |
| 1일단 비용       | 93,070  | 86,340  | 81,540  |
| 비급여(식재료+간식비) | 426,000 | 426,000 | 426,000 |
| 본인부담금 (8%)   | 223,368 | 207,216 | 195,696 |
| 본인부담금(12%)   | 335,052 | 210,824 | 293,544 |
| 본인무담금(20%)   | 558,420 | 518,040 | 489,240 |

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급여비용    | 세부내용        |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  |
| 음식재료비   | 식비/간식비      | (식비)4,000원× 3회(간식) 1,100원×2회 | 일 14,200원 |
| 경관영양유동식 | 처방 및 진료에 따름 | 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비        |

맘편한요양원(031-889-9989)